

## 작년과 달라지는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Check-point

(국세청, 2006.1.11)

### □□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(소득세법 제12조)

종 전	개 정
< 신 설 >	○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급여, 퇴직 소득 및 보상금, 연금소득 - 비과세

### □□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(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)

종 전	개 정
○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- 국외지역 근무자 : 월 150만원 - 원양어업선박 국외항행선박근로 종사자 : 월 150만원	- 월 100만원 - 현행 유지(월 150만원)

### □□ 의료비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(소득세법 제52조 제1항)

종 전	개 정
○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- 매년 1월~12월 지출분	- 전년 12월 ~ 금년 11월 지출분 (’06년 귀속은 1월 ~ 11월)

### □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공제율 인하 (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)

종 전	개 정
○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한 - ’05년 11월 30일 지출분까지	○ 기한 연장 - ’07년 11월 30일 지출분까지
○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 = (사용금액 - 총급여액×15%)×20%	○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 = (사용금액 - 총급여액×15%)×15%

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범위 확대  
(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 공제</li> <li>- 출자대상 :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기업구조조정조합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자대상 □□한국벤처투자조합□□ 추가</li> </ul>

□□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(소득세법 제52조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</li> <li>- 무주택자</li> <li>-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주택자</li> <li>-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*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</li> <li>- 세대주인 근로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취득</li> </ul> </li> <li>-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</li> <li>-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</li> <li>-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대주인 근로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</li> </ul> </li> <li>-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*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</li> <li>- 2주택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</li> <li>-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</li> </ul>

※ '06년 1.1.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함

□□ 주택자금소득공제 신청시 주택가격 입증서류 제출  
(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4호)

종 전	개 정
< 신 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택가격 입증서류 제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분양 : 분양계약서</li> <li>- 주택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개별주택가격확인서</li> <li>• 공동주택가격확인서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
□□ 주택 분양권 주택가격 기준 명시(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3항)

종 전	개 정
< 신 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택분양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분양가격</li> </ul> </li> <li>○ 주택입주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+ 납부한 청산금</li> </ul> </li> <li>-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- 지급받은 청산금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
□□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채무상환요건 변경시 소득공제 요건 강화  
(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1항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15년 미만 주택저당차입금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득공제대상인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(기존차입금을 상환)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득공제 요건 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</li> </ul> </li> </ul>

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양수인이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 강화  
(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2항)

종 전	개 정
○ 주택 양수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- 주택 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 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	○ 소득공제 요건 보완  - 주택 양수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

□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(소득세법 제51조의 3)

종 전	개 정
○ 근로자의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: 연간 240만원한도	○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하여 소득 공제 추가 허용 -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과 통합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 공제

□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 범위 확대(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)

종 전	개 정
○ 소득공제 증빙서류중 의료비 영수증 - 「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」의 의료비영수증	-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「의료비부담내역서」 추가

□ 개인연금저축 등 특별해지신고 기한 신설

(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·제8항·제80조의2 제4항·제8항, 제81조 제2항·제5항, 제83조 제4항·제10항)

종 전	개 정
<p>&lt;신 설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인연금저축 등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특별해지 사유발생일부터 6월이내에 해지시 해지로 인한 추정세액 대상에서 제외</li> <li>○ 특별해지사유 발생으로 해지신청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저축의 특별해지 사유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망, 해외이주</li> <li>- 천재·지변, 저축자의 퇴직</li> <li>- 사업장의 폐업</li> <li>-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</li> <li>- 금융기관의 해산·파산 등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
□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 신설

(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, 제12항, 법인세법 제76조, 제112조의 2)

종 전	개 정
<p>&lt;신 설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장 작성 불이행가산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.1%</li> </ul> </li> <li>○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가산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실과 다른 금액의 1%</li> <li>※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</li> </ul> </li> </ul>

□ 법정기부금의 범위 조정

(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호 및 제3호의2, 제6호, 시행령 제81조 제7항)

종 전	개 정
<p>○ 법정기부금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천재·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</li>   <li>- 사립학교, 기능대학,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·교육비·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</li> </ul> <p>○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공제에 있어서의 자연봉사지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「재난관리법」에 의한 특별재난지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천재·지변 및 기타 재난*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</li> <li>* ‘기타 재난’을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재난으로 한정</li> <li>- 대상단체에 비영리교육재단,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내 외국교육기관,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대한적십자사를 추가</li> <li>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의한 특별재난지역</li> </ul>

□ 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추가(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)

종 전	개 정
<p>○ 지정기부금* 지정단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단체</li> <li>- 노동조합비</li> <li>- 교원단체 납부회비</li> <li>- 공무원직장협의회 납부회비</li> </ul> <p>* 소득금액의 10%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금</p>	<p>○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요건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</li> <li>•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제한</li> <li>• 자체재원조달비율이 50%이상</li> </ul> </li> <li>- 지정절차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행정자치부장관 추천</li> <li>• 재정경제부장관이 심사·지정</li> </ul> </li> </ul>

- 연말정산 전산화 대상 자료 제출 의무 신설  
(소득세법 제165조,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3)

종 전	개 정
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전산화 대상 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</li> <li>[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직업훈련비, 개인연금저축, 연금저축, 퇴직연금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]</li> </ul>

-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(소득세법 제164조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급조서 제출대상</li> <li>-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용근로소득 추가</li> </ul>

-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(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제6항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대상자</li> <li>- 복식부기의무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</li> </ul>

- 지급조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(소득세법 제81조 제5항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한내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</li> <li>-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·불분명 금액의 2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시 지급금액의 1%</li> </ul>